

재산심의회운영세칙

여수시도시공사 제정 2008.10.7. 세칙 제5호

제정 2017.11.17. 세칙 제6호

일괄개정 2024.5.7. 세칙 제38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재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가격의 사정
2. 대부료 사정
3. 재산의 교환 및 기부, 수증의 적정여부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감정가액의 사정. 다만, 보상이 사정은 제외한다.

제3조(조직) 심의회의 구성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임시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순으로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 ① 심의요구 부서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토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등) 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서면심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재산가액 또는 대부료, 임대료 등이 5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9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재산심의회운영세칙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호, 2024. 5. 7.>

이 세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